

제28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 조 례 안

(11건)

거 창 군

# --- 목 차 ---

의안번호	조 례 명	쪽수
2025-44	거창군 군민행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예산담당관)	1
2025-45	조직개편 등 일괄정비를 위한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등 1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기획예산담당관)	7
2025-46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과)	23
2025-47	거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행정과)	31
2025-48	거창군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행정과)	49
2025-49	거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과)	60
2025-50	거창군 수송대관광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관광진흥과)	70
2025-51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정책과)	88
2025-52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보건정책과)	98
2025-53	거창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출·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도사업소)	110
2025-54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체육시설사업소)	124

# 거창군 군민행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5-44
----------	---------

제출자	거창군수
-----	------

## 1. 제안 이유

거창군의 중요정책에 대한 각 분야 전문가와 거창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설치 중인 군민행복위원회에 대해서 그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안건이 생길 때 마다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정비하여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위원회 운영을 비상설화함(안 제2조)
- 나. 위원 임기를 삭제함(안 제4조)
- 다.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원칙에 따라 정비함(안 제9조)

##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130조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5. 3. 12.~3. 24.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 거창군 군민행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군민행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되, 위원회의 의결이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b>제2조(설치와 기능)</b>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요정책 등에 관하여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거창군 군민행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p> <p>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제안·심의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거창군 행정(이하 “군정”이라 한다) 주요 현안에 관한 사항</li> <li>2. 거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제도나 시책의 도입·추진에 관한 사항</li> <li>3. 군민생활불편이나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li> <li>4. 그 밖에 군정발전과 군민화합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ol> <p style="text-align: right;"><u>&lt;신 설&gt;</u></p> <p><b>제4조(임기) <u>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u></b></p> <p><b>제9조(간사)</b>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업무 담당주사로 한다.</p>	<p><b>제2조(설치 등)</b>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요정책 등에 관하여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거창군 군민행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p> <p>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제안·심의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거창군 행정(이하 “군정”이라 한다) 주요 현안에 관한 사항</li> <li>2. 거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제도나 시책의 도입·추진에 관한 사항</li> <li>3. 군민생활불편이나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li> <li>4. 그 밖에 군정발전과 군민화합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ol> <p><b>③ <u>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되, 위원회의 의결이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u></b></p> <p><u>&lt;삭 제&gt;</u></p> <p><b>제9조(간사)</b>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u>간사는 위원회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u></p>

## 관련법령

### □ 「지방자치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951호, 2024. 1. 9., 타법개정]

-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절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절차,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 □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중

제정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스포츠마케팅 계장(담당 주사)으로 한다.	제12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스포츠마케팅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 계장(또는 담당주사)은 「○○시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따른 직위가 아니므로 문구를 수정할 것을 권고함

# 조직개편 등 일괄정비를 위한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등 1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025-45	제출자	거창군수
----------	---------	-----	------

## 1. 제안 이유

조직개편, 법령개정, 경쟁제한 개선과제 등에 따른 정비를 위해 12개 조례를 일괄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조직개편 사항 정비(안 제1조, 제4조~제6조, 제8조·제9조·제11조)

- 1) 농업인 지원 ⇒ 농업인 육성
- 2) 문화관광과장 ⇒ 문화예술과장, 관광진흥과장
- 3) 행복농촌과장 ⇒ 미래농업과장

나.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정비(안 제2조·제3조·제7조·제10조)

다. 경쟁제한 개선과제 등 정비(안 제12조)

##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 「도서관법 시행령」 제4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9,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5. 3. 5.~3. 25.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거창군 조례 제 호

### 조직개편 등 일괄정비를 위한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등 1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제1조(「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호 중 “농업인 지원”을 “농업인 육성”으로 한다.

제2조(「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2배”를 “5배”로 한다.

제3조(「거창군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거창군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도서관법 시행령」 제5조제4호”를 “「도서관법 시행령」 제4조제6호”로 한다.

제4조(「거창군 우리말 사용 활성화 조례」) 거창군 우리말 사용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

제5조(「거창군 아립예술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거창군 아립예술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제1호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

제6조(「거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거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별표 4, 별표 5 중 “문화관광과”를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로 각각 하고 별표 2 중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관광과”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로 “국가유산청: 문화관광과”를 “국가유산청: 문화예술과”로 한다.

제7조(「거창군 거창 향노화 힐링랜드 운영 조례」) 거창군 거창 향노화 힐링랜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제2항제2호 중 “제9조의7”을 “제9조의9”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8조(「거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거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1호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

제9조(「거창군 거창사과 융복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거창군 거창사과 융복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행복농촌과장”을 “미래농업과장”으로 한다.

제10조(「거창군 지역보건의료기관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거창군 지역보건의료기관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를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으로 한다.

제11조(「거창군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 조례」) 거창군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행복농촌과장, 민원소통과장, 문화관광과장”을 “미래농업과장, 민원소통과장, 관광진흥과장”으로 한다.

제12조(「거창군 석재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거창군 석재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불필요한 경쟁을 자제”를 “건전한 경쟁을 유도”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 1.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현행	개정안
<p>제9조(소관사무)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p> <p>1. 농업정책, 농지 보존·이용에 관한 사항</p> <p>2. 농촌지도사업, <u>농업인 지원</u>에 관한 사항</p> <p>3.~17. (생략)</p>	<p>제9조(소관사무)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p> <p>1. 농업정책, 농지 보존·이용에 관한 사항</p> <p>2. 농촌지도사업, <u>농업인 육성</u>에 관한 사항</p> <p>3.~17. (현행과 같음)</p>

### 2.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현행	개정안
<p>제5조(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및 환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u>2배</u>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p> <p>②·③ (생략)</p>	<p>제5조(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및 환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u>5배</u>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p> <p>②·③ (현행과 같음)</p>

### 3. 거창군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현행	개정안
<p>제8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p> <p>①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 등 문화시설과 자료를 상호 교환하거나 이관할 수 있고, 파손이나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의 자료를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하는 경우에는 「<u>도서관법 시행령</u>」 제5조제4호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p>	<p>8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p> <p>①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 등 문화시설과 자료를 상호 교환하거나 이관할 수 있고, 파손이나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의 자료를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하는 경우에는 「<u>도서관법 시행령</u>」 제4조제6호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p>

#### 4. 거창군 우리말 사용 활성화 조례

현행	개정안
<p>제9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p> <p>① 군수는 우리말 발전과 보전을 위해 <u>문화관광과장</u>을 국어책임관으로 임명해 우리말 진흥업무를 총괄하도록 해야 한다.</p> <p>② (생략)</p>	<p>제9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p> <p>① 군수는 우리말 발전과 보전을 위해 <u>문화예술과장</u>을 국어책임관으로 임명해 우리말 진흥업무를 총괄하도록 해야 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 5. 거창군 아립예술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현행	개정안
<p>제8조(아립예술제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③ (생략)</p> <p>④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p> <p>1. 당연직 위원: <u>문화관광과장</u>, 재무과장</p> <p>2. 위촉직 위원: 문화예술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3명</p> <p>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p>	<p>제8조(아립예술제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③ (현행과 같음)</p> <p>④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p> <p>1. 당연직 위원: <u>문화예술과장</u>, 재무과장</p> <p>2. 위촉직 위원: 문화예술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3명</p> <p>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p>

#### 6. 거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p>[별표 1] 실무반의 임무</p> <p>자연재난 실무반별 업무</p> <p>- 담당부서: <u>문화관광과</u></p> <p>사회재난 실무반별 업무</p> <p>- 담당부서: <u>문화관광과</u></p> <p>[별표 2] 재난수습 주관부서</p> <p>- 문화체육관광부: <u>문화관광과</u></p> <p>- 국가유산청: <u>문화관광과</u></p> <p>[별표 4] 자연재난의 비상단계 실무반편성기준</p>	<p>[별표 1] 실무반의 임무</p> <p>자연재난 실무반별 업무</p> <p>- 담당부서: <u>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u></p> <p>사회재난 실무반별 업무</p> <p>- 담당부서: <u>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u></p> <p>[별표 2] 재난수습 주관부서</p> <p>- 문화체육관광부: <u>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u></p> <p>- 국가유산청: <u>문화예술과</u></p> <p>[별표 4] 자연재난의 비상단계 실무반편성기준</p>

<p>- 실무반: <u>문화관광과</u></p> <p>[별표 5] 사회재난의 비상단계 실무 반편성기준</p> <p>- 실무반: <u>문화관광과</u></p> <p>[별표 6] 대책본부 구성도</p> <p>- 시설피해응급복구반: <u>문화관광과</u></p>	<p>- 실무반: <u>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u></p> <p>[별표 5] 사회재난의 비상단계 실무 반편성기준</p> <p>- 실무반: <u>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u></p> <p>[별표 6] 대책본부 구성도</p> <p>- 시설피해응급복구반: <u>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u></p>
---	--

### 7. 거창군 거창 향노화 힐링랜드 운영 조례

현행	개정안
<p>제5조(입장료 등 징수 및 할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u>제9조의7</u>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li> <li>2. 24세 이하 자녀를 둘 이상 둔 다자녀 가정</li> <li>3. 「<u>거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u>」 <u>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u></li> <li>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li> <li>5. 숲속의 집, 산림휴양관 등 시설사용자</li> <li>6. 그 밖에 군수가 힐링랜드에 공익목적의 행사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li> </ol> <p>②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설사용료 또는 체험료를 면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등, 공익목적: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li> <li>2. 영 <u>제9조의7제2항제5호</u>부터 제10호까지, 제10호의2부터 제10호의4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산림</li> </ol>	<p>제5조(입장료 등 징수 및 할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u>제9조의9</u>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li> <li>2. 24세 이하 자녀를 둘 이상 둔 다자녀 가정</li> </ol> <p><u>&lt;삭 제&gt;</u>2021.9.29. 「거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폐지/ 거창군민은 제5조 제1항제1호에 따라 입장료 면제되어 불필요 항목으로 삭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li> <li>5. 숲속의 집, 산림휴양관 등 시설사용자</li> <li>6. 그 밖에 군수가 힐링랜드에 공익목적의 행사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li> </ol> <p>②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설사용료 또는 체험료를 면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등, 공익목적: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li> <li>2. 영 <u>제9조의9제2항제5호</u>부터 제10호까지, 제10호의2부터 제10호의4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산림</li> </ol>

휴양관 또는 숲속의집 사용자, 공무 수행자: 주차장 사용료 ③ (생략)	휴양관 또는 숲속의집 사용자, 공무 수행자: 주차장 사용료 ③ (현행과 같음)
---	---

### 8. 거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현행	개정안
<p>제4조(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③ (생략)</p> <p>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p> <p>1. <u>문화관광과장</u>, 거창읍장</p> <p>2. 옥외광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명 이상</p> <p>⑤ (생략)</p>	<p>제4조(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③ (현행과 같음)</p> <p>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p> <p>1. <u>문화예술과장</u>, 거창읍장</p> <p>2. 옥외광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명 이상</p> <p>⑤ (현행과 같음)</p>

### 9. 거창군 거창사과 융복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현행	개정안
<p>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p> <p>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③ 위원회 위원은 <u>행복농촌과장</u>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촉한다.</p> <p>1.~4. (생략)</p>	<p>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p> <p>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③ 위원회 위원은 <u>미래농업과장</u>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촉한다.</p> <p>1.~4. (현행과 같음)</p>

10. 거창군 지역보건의료기관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u>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u>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진료비 및 수수료)                      ①·② (생략)                      ③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진단서 등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진단서 및 일반진단서: 건당 500원                      2. 「<u>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u>」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 건당 3,000원                      3. 이미 발급된 진단서 등의 재발급: 건당 300원</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u>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u>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진료비 및 수수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진단서 등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진단서 및 일반진단서: 건당 500원                      2. 「<u>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u>」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 건당 3,000원                      3. 이미 발급된 진단서 등의 재발급: 건당 300원</p>

11. 거창군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 조례

현행	개정안
<p>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생략)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 <u>행복농촌과장, 민원소통과장, 문화관광과장, 경제기업과장</u>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나. 외식·관광 또는 식품 관련 대학교수 등 전문가</p>	<p>제10조(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 <u>미래농업과장, 민원소통과장, 관광진흥과장, 경제기업과장</u>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나. 외식·관광 또는 식품 관련 대학교수 등 전문가</p>

<p>다. 외식업소 관련 단체 임직원 라. 그 밖에 외식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생략)</p>	<p>다. 외식업소 관련 단체 임직원 라. 그 밖에 외식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현행과 같음)</p>
--	--

## 12. 거창군 석재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현행	개정안
<p>제5조(석재사업자의 책무) ① 석재사업자는 우수 석재 및 석재제품을 채취·가공하고 판로를 개척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석재사업자는 업체 간 상호 협력하고 <u>불필요한 경쟁을 자제</u>하며, 부조리 근절에 노력해야 한다.</p>	<p>제5조(석재사업자의 책무) ① 석재사업자는 우수 석재 및 석재제품을 채취·가공하고 판로를 개척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석재사업자는 업체 간 상호 협력하고 <u>건전한 경쟁을 유도</u>하며, 부조리 근절에 노력해야 한다.</p>

## 관련법령

### □ 「지방자치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951호, 2024. 1. 9., 타법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 자. 공유재산(公有財産) 관리
  - 차. 주민등록 관리
  -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
  -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 가. 못·늪지·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
  - 다. 농업자재의 관리
  -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 바. 농가 부업의 장려
  - 사. 공유림 관리
  -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 자. 가축전염병 예방
-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 타. 중소기업의 육성
-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 하. 우수지역특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 가. 지역개발사업
  -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 다.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
  - 라. 지방도(地方道), 시도(市道)·군도(郡道)·구도(區道)의 신설·개선·보수 및 유지
  -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 바. 농어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 사. 자연보호활동
  -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 차.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카. 도립공원, 광역시립공원, 군립공원, 시립공원 및 구립공원 등의 지정 및 관리
  - 타.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녹지, 유원지 등과 그 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파.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하.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 거.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너.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 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 가.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다. 시·도유산의 지정·등록·보존 및 관리
  -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
  - 나.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 7. 국제교류 및 협력
  - 가. 국제기구·행사·대회의 유치·지원

나.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 「도서관법 시행령」

[시행 2024. 5. 28.] [대통령령 제34533호, 2024. 5. 28., 타법개정]

**제4조(국가도서관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 법 제11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이용 실태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에 관한 사항
3.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4. 법 제17조에 따른 광역도서관위원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도서관 인력·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과 범위에 관한 사항
6. 도서관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除籍: 더 이상 이용가치가 없는 도서를 등록대장에서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의 기준과 범위에 관한 사항
7. 도서관 이용 등에 관한 국민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법 제11조에 따른 국가도서관위원회(이하 “국가도서관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11. 5.] [대통령령 제34982호, 2024. 11. 5., 일부개정]

**제9조의9(자연휴양림등의 이용료)** ①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 등(이하 “이용료”라 한다)은 해당 자연휴양림등의 조성·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정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만 해당한다.

1. 국민 및 그 수행원
2.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원
3. 만 6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유족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

공자(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2급·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 및 유족

8.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장해등급 1급·2급·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 및 유족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상이등급 1급·2급·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 및 유족

10의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10의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10의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의사상자(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의사자유족, 의사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10의5. 「체육인 복지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대한민국체육유공자와 그 배우자,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활동을 직접 보조하는 사람 1명(대한민국체육유공자와 동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연금을 지급받을 선순위 유족 1명

10의6.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귀환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2. 「산림보호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13.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의 단원

14. 해당 자연휴양림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

15. 해당 자연휴양림등에 있는 사찰 등에 상시 출입하는 사람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입장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용료의 세부적인 징수기준은 국가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자연휴양림등을 조성한 자가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2. 31.] [제9조의7에서 이동 <2023. 6. 7.>]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시행 2024. 11. 23.] [총리령 제1916호, 2023. 11. 22., 타법개정]

제2조(건강진단 항목 등) ①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1항 본문에 따른 건강진단(이하 “건강진단”이라 한다)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7.>

1. 장티푸스
2. 파라티푸스
3. 폐결핵

② 법 제40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매 1년마다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12. 7.>

③ 건강진단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며, 직전 건강진단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신설 2023. 12. 7.>

④ 건강진단은 건강진단의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천재지변,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건강진단 대상자가 건강진단 실시기간 이내에 건강진단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7.>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유행으로 인하여 제3조에 따른 실시 기관에서 정상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건강진단을 유예할 수 있다. <신설 2022. 4. 28., 2023. 12. 7.>

⑥ 제5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유예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신설 2022. 4. 28., 2023. 12. 7.>

제5조(수수료) 보건소에서 제2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보건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8. 3. 28., 2023. 11. 22.>

□ 「거창군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폐지 2021. 9. 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다문화가족”이란 군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1. 결혼이민자(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 가족
2. 거창군민과 외국인과의 혈연, 입양 등으로 결합하여 이루어진 가족
3. 「국적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로 이루어진 가족

□ 「거창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2021. 9. 29., 제정]

제4조(지원대상) 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족 및 다문화가족
2. 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등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5. 1. 3.] [대통령령 제35184호, 2025. 1. 3., 일부개정]

제18조의8(가산징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1. 11. 30.>

② 제1항에 따른 징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5-46
----------	---------

제출자	거창군수
-----	------

## 1. 제안이유

거창군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고 공직사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재직기간 1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의 안식휴가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 정비함(안 제23조, 별표 2)

- 1)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공무원 범위 및 사용기간을 확대함
- 2)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시 휴가: 법령 재기재로 삭제

나. 안식휴가 대상 확대·신설함(안 제23조)

- 1)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3일
- 2)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지방공무원법」 제59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5. 3. 10.~3. 24.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36개월”로 “24개월”을 “36개월”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허가할”을 “줄”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군수는 장기재직한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휴가를 허가 할 수 있고”를 “군수는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안식휴가를 줄 수 있고”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3일
2.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b>제23조(특별휴가)</b> ① 군수는 경조사가 있는 공무원에게 신청을 받아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p> <p>② <u>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u>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명당 각각 <u>24개월</u>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li> <li>2. 월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li> <li>3. 월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월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을 연속사용한 것으로 봄)</li> </ol> <p>③·④ (생략)</p> <p>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u>허가할</u> 수 있다.</p> <p>1.~3. (생략)</p> <p>⑥ <u>군수는 장기재직한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휴가를 허가 할 수 있고</u>, 소급 및 이월 사용은 할 수 없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다.</p> <p style="text-align: right;"><u>&lt;신 설&gt;</u> <u>&lt;신 설&gt;</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li> <li>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li> <li>3.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li> </ol> <p>⑦ (생략)</p>	<p><b>제23조(특별휴가)</b> ① 군수는 경조사가 있는 공무원에게 신청을 받아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p> <p>② <u>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36개월</u>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명당 각각 <u>36개월</u>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li> <li>2. 월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li> <li>3. 월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월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을 연속사용한 것으로 봄)</li> </ol> <p>③·④ (현행과 같음)</p> <p>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u>줄</u> 수 있다.</p> <p>1.~3. (현행과 같음)</p> <p>⑥ <u>군수는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u>에 따른 안식휴가를 줄 수 있고, 소급 및 이월 사용은 할 수 없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3일</li> <li>2.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li> <li>3.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li> <li>4.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li> <li>5.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li> </ol> <p>⑦ (현행과 같음)</p>

[별표 2]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3조제1항 관련)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del>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lt;삭 제&gt;</del> <u>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u>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비고: 경조사휴가를 사용할 때 원경지일 경우에는 실제 왕복에 필요한 일수를 더할 수 있다.

## 관련법령

### □ 「지방공무원법」

제59조(위임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25. 2. 11.] [대통령령 제35259호, 2025. 2. 11., 일부개정]

제7조의7(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7. 4. 25., 2021. 11. 30.>

③ 임신 중인 공무원은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임신 중인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6. 30., 2021. 11. 30., 2021. 12. 31., 2023. 7. 18., 2024. 7. 2., 2025. 2. 11.>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 또는 조산(早産)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④ 유산하거나 사산한 여성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6. 30., 2019. 12. 31., 2024. 7. 2.>

1.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2.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⑤ 남성공무원은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 3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1., 2021. 11. 30., 2024. 7. 2.>

⑥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난임치료시술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2019. 12. 31., 2021. 12. 31., 2024. 7. 2.>

1. 여성공무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목에서 정한 기간

가. 인공수정 등 시술을 받는 경우: 총 2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1일)

나. 동결 보존된 배아를 이식하는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3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다. 난자 채취를 하여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4일(난자 채취일에 1일, 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난자 채취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 난자 채취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2. 남성공무원: 정자 채취일에 1일

⑦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3. 5. 31., 2018. 12. 18., 2019. 12. 31., 2024. 7. 2.>

⑧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36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7. 4. 25., 2018. 12. 18., 2019. 12. 31., 2024. 7. 2.>

⑨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2024. 7. 2.>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휴업·휴원·휴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2.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인 자녀·손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4.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⑩ 제9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로 한정한다)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해당 공무원의 자녀(제9항제1호에 따른 어린이집등에 재학 중이거나 미성년인 자녀 또는 장애인인 자녀를 말한다)수에 1을 더한 일수까지를 연간 유급휴가 일수로 한다. 다만, 장애인인 자녀가 있는 공무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연간 유급휴가 일수에 1일을 더한 일수까지 연간 유급휴가 일수로 한다. <신설

2020. 10. 20., 2024. 7. 2.>

⑪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해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신설 2019. 12. 31., 2020. 10. 20., 2024. 7. 2.>

⑫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1., 2020. 10. 20., 2024. 7. 2.>

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입은 피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입은 공무원과 재난 발생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0. 10. 20., 2021. 11. 30.>

⑭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4일의 범위에서 심리상담, 진료 및 휴식을 위한 심리안정휴가를 줄 수 있다. <신설 2023. 7. 18.>

1.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제1호 및 제6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사고를 경험했을 것
2. 제1호에 따른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사고의 경험으로 인해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전문개정 2010. 7. 15.]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별표 1] <개정 2025. 2. 11.>

**경조사 휴가일수표**(제7조의7제2항 관련)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본인	5일
	자녀	1일
출산	배우자	2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
입양	본인	20일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3일

비 고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제7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7조의7은 제7조의8로 이동 <2019. 4. 16.>]

부칙 <제34661호, 2024. 7. 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시간 사용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7제8항 및 별표 2 제5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육아시간을 사용한 공무원 또는 시간선택제공무원등에 대해서는 이 영 시행일을 기준으로 종전에 사용한 일수를 공제하고 적용한다.

**제3조(이월·저축한 연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10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이월·저축한 연가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경조사 휴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경조사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거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5-47
----------	---------

제출자	거창군수
-----	------

## 1. 제안 이유

2013년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2023년 주민자치회 전면 시행으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거창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입법 경제성 및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명 변경: 거창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 나. 목적, 운영원칙을 정함(안 제1조·제2조)
- 다.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을 정함(안 제3조~제21조)
- 라.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등을 정함(안 제22조~제29조)
- 마. 지원 및 주민자치연합회 설치 근거 등을 정함(안 제30조~제32조)
- 바. 「거창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안 부칙)

##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 나. 예산조치: 2025년도 예산 644백만원 확보
- 다. 합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5. 2. 4.~2. 24.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반영함(안 제7조·제9조)

## 거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거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거창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에 두는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센터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센터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2.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3. 주민의 참여 보장
4. 주민자치회 활동의 진흥
5. 읍·면별 자율적인 운영
6.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 제2장 주민자치회의 구성

제3조(설치 및 명칭)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1항에

따라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읍·면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읍·면 주민자치회로 한다.

**제4조(기능)** 주민자치회는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총회 개최, 주민자치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공동체 형성, 그 밖에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 업무
2. 읍·면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3. 읍·면 행정기능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4. 「지방재정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도(이하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에 따른 제안사업의 내용과 우선순위
5. 읍장·면장(이하 “읍면장”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심의

**제5조(자치위원의 수)** 주민자치회의 위원(이하 “자치위원”이라 한다)은 20명 이상 40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6조(자치위원의 자격)** 자치위원은 제7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 모집한 날 현재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해당 읍·면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치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2. 거창군의회 의원
3. 제11조제1항제2호·제3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

**제7조(자치위원의 선정)** ① 자치위원은 제9조에 따른 위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자치위원을 선정한다. 다만, 자치위원 중 특정 성별이 전체 자치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

도록 하고 다양한 계층의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 공개 추천: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대상. 이 경우 전체 자치위원 수의 60퍼센트 이상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선출
  - 가. 해당 읍·면 이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전체 자치위원 수의 20퍼센트 이하
  - 나. 해당 읍·면 소재 사업장·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전체 자치위원 수의 20퍼센트 이하
- ② 선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자치위원을 선정할 때 예비후보자 순위를 5명 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
- ③ 주민자치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치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명부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자치위원의 위촉 등)** ① 군수는 명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치위원 선정결과에 따라 자치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자치위원은 군수가 인정하는 주민자치 활동에 관한 기본교육 3시간을 사전 이수하거나, 위촉 후 3개월 안에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③ 군수는 자치위원의 사임이나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한다. 다만,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 제7조제2항에 따른 예비후보자 순위에 따라 위촉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 제7조 및 제8조제1항·제2항의 절차에 따라 위촉

④ 군수는 자치위원을 위촉하였을 때에는 자치위원의 주요 인적사항을 위촉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읍·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이나 군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등”이라 한다)에 공고해야 한다.

⑤ 군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자치위원 공개모집 사실을 설명회의 방식으로 홍보할 수 있다.

제9조(위원선정위원회) ① 자치위원의 공개 추천이나 선출을 위하여 읍·면에 ○○읍·면 위원선정위원회를 둔다.

② 선정위원회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읍면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위촉한다. 다만, 현재 자치위원이거나 자치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선정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1. 읍·면장이 추천하는 2명 이내의 사람

2. 읍·면 소재 주요 기관·단체 또는 주민자치회에서 추천하는 3명 이내의 사람

④ 선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선정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하고, 제7조에 따른 자치위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의 선정이 완료되면 자동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자치위원의 임기) 자치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연임할 경우에도 제7조 및 제8조의 절차에 따른다.

제11조(자치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자치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해촉된 것으로 보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

1. 제6조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2. 둘 이상의 자치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3.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

4.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제12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자치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다른 위원이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連書)를 받아 군수에게 해촉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촉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12조(자치위원의 의무)** ① 자치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② 자치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해야 하며, 사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제13조(자치위원의 대우)** 자치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자치회의 업무 수행을 위한 실비(實費)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2명 이내로 두되,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회장(2명일 경우 연장자 순으로 한다)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④ 자치회장은 위원 중 간사 1명을 지명하여 주민자치회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제3장 주민자치회의 운영

**제15조(회의 등)**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주민자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월 1회

2. 임시회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재적 자치위원의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 ③ 주민자치회의 회의는 재적 자치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주민자치회의 회의는 주민자치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읍·면의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읍면장은 주민자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⑥ 주민자치회는 필요한 경우 문서회람,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감사)** 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2명을 두고,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에 보고해야 하며, 주민자치회는 이를 홈페이지등에 연 1회 이상 공개해야 한다.
- ③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7조(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의결에 따라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은 자치위원 수의 3배수 이상의 주민이 참석하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읍·면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 제시
3. 읍·면의 다음 연도 주민자치계획안
4.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5. 그 밖의 지역 현안, 주민 자치, 민관협력 등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주민총회일 30일 전부터 상정안건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면 심의

안건에 대한 사전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④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의 안건 심의를 위해 해당 읍·면의 관계공무원을 주민총회에 참석하게 할 수 있으며, 군수 및 해당 읍면장은 주민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지역 주민이 직접 발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해당 홈페이지등에 30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

**제18조(주민자치계획의 수립)** ①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민자치계획(이하 “자치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 계획
2. 마을 발전 및 활성화 계획
3. 읍·면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 계획
4. 주민자치센터 운영 계획
5. 분과별 사업 계획

6. 그 밖에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②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 따라 자치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자치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총회 의결을 거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자치계획안을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치계획안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그 검토 결과를 자치계획안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해당 주민자치회에 알려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고려하여 자치계획을 확정·의결하고, 확정된 자치계획을 홈페이지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19조(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자치위원과 제6조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장은 제2항의 자치위원 중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20조(보험 가입)** 군수는 자치위원 등이 주민자치회 직무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필요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2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자치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정한다.

## 제4장 주민자치센터

**제22조(설치)** ① 군수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읍·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은 "○○읍·면 주민자치센터"로 한다.

**제23조(기능)** 주민자치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다만, 읍·면의 실정에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1. 주민자치
2. 문화여가
3. 지역복지
4. 주민편익
5. 군민교육
6. 지역사회진흥

**제24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 군수는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읍·면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갖춰야 한다.

② 주민자치센터의 시설과 프로그램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이하 "주민

자치센터의 운영"이라 한다)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장이 정한다. 다만 읍·면별 특성, 재정형편, 유사시설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가 조정할 수 있다.

**제25조(위탁 운영)** 군수는 필요할 경우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주민자치회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주민자치회에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프로그램 선정 및 운영
2. 프로그램 신청자 모집 및 선정·관리
3. 프로그램 수강료 결정 및 감면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읍면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26조(이용료 등)** ①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이용과 프로그램 수강 등은 무료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용자로부터 이용료, 수강료 등(이하 “이용료등”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이용료등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수익자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읍면장이 정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용료등을 면제할 수 있다.

1. 이용료: 민간 단체, 동호회 등에서 공익 또는 비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수강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수급자와 읍면장과 주민자치회가 협의하여 면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

④ 이용료등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한다.

**제27조(주민참여)** ① 읍면장과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② 관할구역의 주민이나 단체는 읍면장 또는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주민의 참여 요구나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읍면장 또는 주민자치회는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반영해야 한다.

**제28조(자원봉사자 활용 등)** ① 읍면장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자원봉사자를 적극 모집·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센터 프로그램의 질적향상 등을 위해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제29조(보고)** ① 읍면장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주민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읍면장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반기 경과 후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5장 지원 등

**제30조(지원 등)** ① 군수는 주민자치회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읍·면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
2. 제4조의 업무 수행
3. 역량강화 교육

② 군수는 주민자치회가 하는 주민총회나 행사에 참석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홍보물품 및 기념품
2. 통상적 범위의 식사류와 다과류 등의 음식물

③ 군수는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온라인 참여여건 조성
2. 주민자치 교육

### 3. 주민자치회에 회의공간 지원 등

**제31조(주민자치회 간 협조)** 주민자치회는 제4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다른 주민자치회와 공동 추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별도의 협의체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32조(주민자치연합회)** ① 주민자치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거창군 주민자치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연합회는 거창군 각 읍·면 자치회장 등으로 구성한다.

③ 연합회의 임원 선출 및 회의 방법 등은 연합회 정관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거창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주민자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거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구성된 주민자치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구성된 것으로 보며, 종전의 「거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거창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주민자치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된 것으로 보며, 종전의 「거창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

**제4조(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에 대한 한시적 특례)** 제1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치위원의 임기만료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임기만료일이 2025년 8월 27일인 경우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2. 임기만료일이 2026년 8월 11일인 경우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3. 임기만료일이 2027년 1월 5일인 경우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4. 임기만료일이 2027년 1월 14일인 경우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 「거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를 “ 「거창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로 한다.

# 거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가. 비용발생 요인: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 나. 관련 조문: 운영 지원(안 제30조)

##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1차연도 (2025년)	2차연도 (2026년)	3차연도 (2027년)	4차연도 (2028년)	5차연도 (2029년)	합계
군비	644	644	644	644	644	3,220

## 3. 비용추계 상세내역

- 가. 주민자치회 운영 및 사업: 369백만원
- 나.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수당: 275백만원

작성자 행정과장 윤 광 식

## 관련법령

###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514호, 2023. 7. 4., 타법개정]

제40조(주민자치회의 설치 등) ①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자치회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가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서 위임하거나 위탁한 사항

④ 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 「지방자치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951호, 2024. 1. 9., 타법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 자. 공유재산(公有財産) 관리

차.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가. 못·늪지·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

다. 농업자재의 관리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바. 농가 부업의 장려

사. 공유림 관리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자. 가축전염병 예방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하. 우수지역특산물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가. 지역개발사업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다.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

라. 지방도(地方道), 시도(市道)·군도(郡道)·구도(區道)의 신설·개선·보수 및 유지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바. 농어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사. 자연보호활동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차.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카. 도립공원, 광역시립공원, 군립공원, 시립공원 및 구립공원 등의 지정 및 관리

타.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녹지, 유원지 등과 그 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파.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거.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너.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가.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시·도유산의 지정·등록·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

나.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7. 국제교류 및 협력

가. 국제기구·행사·대회의 유치·지원

나.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61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① 법 제14조제1항의 배분기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②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시·군과 다르게 자치구에서 처리하지 않고 특별시·광역시에서 처리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③ 법 제14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의 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도의 사무는 별표 3과 같다. 다만,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④ 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도의 사무는 별표 4와 같다. 다만,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1]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제10조제1항 관련)

구분	시·도 사무	시·군·자치구 사무
타. 읍·면·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읍·면·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지원	읍·면·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 거창군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5-48
----------	---------

제출자	거창군수
-----	------

### 1. 제안 이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거창군 외국인주민 지원시책위원회를 폐지하고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 조례 운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제2조)
- 나. 외국인주민의 지위, 군수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제4조)
- 다. 지원사업 등을 정함(안 제5조)
- 라. 위원회의 심의를 정함(안 제6조, 부칙 제2조)
  - 1) 기능 수행: 거창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
  - 2) 폐지: 거창군 외국인주민시책위원회
- 마. 지원단체의 지원, 사무의 위탁을 정함(안 제7조·제8조)

###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제130조, 「지방재정법」 제17조
- 나. 예산조치: 2025년도 예산 50백만원 확보
- 다. 합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5. 2. 20.~3. 12.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거창군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거창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의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주민”이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한외국인으로서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
  - 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2. “외국인주민 가정”이란 외국인주민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제3조(외국인주민의 지위)** 외국인주민은 다른 조례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군민과 동일하게 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군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4조(군수의 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등) ① 군수는 외국인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2.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
  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4. 문화·체육행사 개최
  5. 외국인·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6. 그 밖에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사업을 위해 외국인주민지원시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심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거창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거창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할 수 있다. 이 경우 간사는 외국인주민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외국인주민지원시책 기본계획
2.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
3.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
4. 외국인주민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단체의 지원) 군수는 외국인주민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외국인주민 지원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단체·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창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거창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른 사항

# 거창군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외국인주민 지원사업, 외국인주민 지원단체의 지원

나. 관련 조문: 안 제5조·제7조

##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1차연도 (2025년)	2차연도 (2026년)	3차연도 (2027년)	4차연도 (2028년)	5차연도 (2029년)	합계
군비	50	50	50	50	50	250

## 3. 비용추계 상세내역

가. (행복나눔과) 결혼이민자(외국인주민, 외국인주민 가정 포함)

지원: 50백만원

1) 일자리창출(30백만원)

2) 고향방문사업(15백만원)

3) 자격증취득(5백만원)

작성자 행정과장 윤 광 식

## 관련법령

###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시책 중 외국인정책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한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한외국인을 그 법적 지위에 따라 적정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3.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정보제공 및 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세계인의 날)** ①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부터 1주간의 기간을 세계인주간으로 한다.

② 세계인의 날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민간과의 협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정책에 관한 사업 중의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그 위탁한 사업수행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8. 8., 2024. 1. 9.>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 자. 공유재산(公有財産) 관리
  - 차. 주민등록 관리
  -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
  -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 3.~7. (이하생략)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절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절차,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 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 7. 16.>

□ 「거창군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의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외국인주민”이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등을 말한다.

3. “외국인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주민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4. “외국인주민 지원단체”란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외국인주민의 지위)** ① 외국인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내국인 주민과 동일하게 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군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외국인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군의 책무)** ① 군수는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해 외국인주민지원시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제7조에 따른 거창군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수 등 외국인주민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

**제6조(지원의 범위)**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2.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
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4. 문화·체육행사 개최
5. 외국인·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6. 그 밖에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 제2장 거창군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

**제7조(설치)** 제4조에 따른 외국인주민지원시책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외국인주민 지원시책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조언하게 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행정과장, 복지정책과장, 경제기업과장, 문화관광과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 교육지원청, 경찰서, 고용지원센터,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관련 기관의 외국인주민 지원업무 부서책임자
  3. 대학교수, 민간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외국인주민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지역사회에 적극 참여하거나 성공적인 정착을 한 외국인주민
-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외국인주민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를 자문한다.

1. 외국인주민지원시책 기본계획 및 계획의 변경, 개별 시책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외국인주민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거창군 위원회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3장 외국인주민 지원 활성화

**제14조(외국인주민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군수는 외국인주민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주민 지원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외국인주민 지원단체에 업무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에

게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다문화 주간)** ① 군수는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하여 매년 5월 20일을 "거창군 세계인의 날"로 정하고 세계인의 날부터 한 주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설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세계인의 날 및 다문화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명예군민증서 수여, 유공자·단체(외국인주민 포함) 격려
4.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③ 군수는 제2항의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외국인주민 지원단체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포상)** ① 군수는 외국인주민 지원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주민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1. 군정 또는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경우
2.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통합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포상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거창군 포상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명예군민)** ① 군수는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주민에 대하여 명예군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② 명예군민으로서의 예우와 명예군민증서 수여 등에 관하여는 「거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거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4-49
----------	---------

제출자	거창군수
-----	------

## 1. 제안이유

이장에게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여 이장의 건강보호 및 사기진작을 도모함으로써 주민과 행정 간의 행정능률과 주민편의 제고에 이바지 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건강검진 비용의 지원을 신설함(안 제6조)

##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1)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 2) 「지방재정법」 제17조

나. 예산조치

- 1) 2025년 예산 35,400천원 추경 확보 예정
- 2) 도비 6,600천원 확정 통보

다. 합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5. 2. 28.~3. 20.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 거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건강검진 비용: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시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지원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6조(사기진작) 군수는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복무활동에 필요한 물품 제공</li> <li>2. 단체보험 가입</li> <li>3. 모범이장의 선발 및 표창: 연 2회</li> <li>4. 장기 우수이장 국내외 연수: 연 2회</li> <li>5. 군단위 체육·수련대회: 연 1회</li> </ol> <p style="text-align: right;"><u>&lt;신 설&gt;</u></p>	<p>제6조(사기진작) 군수는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복무활동에 필요한 물품 제공</li> <li>2. 단체보험 가입</li> <li>3. 모범이장의 선발 및 표창: 연 2회</li> <li>4. 장기 우수이장 국내외 연수: 연 2회</li> <li>5. 군단위 체육·수련대회: 연 1회</li> <li>6. <u>건강검진 비용: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시</u></li> </ol>

# 거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I. 비용추계 요약

###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 발생 요인: 이장 건강검진 비용 지원

나. 관련 조문: 사기진작(안 제6조)

###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구분	1차연도 (2025년)	2차연도 (2026년)	3차연도 (2027년)	4차연도 (2028년)	5차연도 (2029년)
합계(100%)	42,000	42,000	42,000	42,000	42,000
도비(15%)	6,600	6,600	6,600	6,600	6,600
군비(85%)	35,400	35,400	35,400	35,400	35,400

##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연 42,000천원 = 1명 300천원 × 140명

### 1. 지원 대상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대상 이장 140명

나. 이장 정수 267명의 50퍼센트 지원

### 2. 지원 금액

가. 1명당 300천원

나. 격년제

작성자 행정과장 윤광식

## 관련법령

### □ 「지방자치법」

[시행 2023. 9. 22.] [법률 제19241호, 2023. 3. 21., 일부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 자. 공유재산(公有財産) 관리
- 차. 주민등록 관리
-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 2. 주민의 복지증진

-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가.~하. (생략)

####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가.~더. (생략)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 2023. 12. 14.] [대통령령 제33966호, 2023. 12. 14., 일부개정]

- 제81조(이장 및 통장의 임명)**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통에는 통장을 두고,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읍·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장 및 통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면장·동장이 임명한다.  
③ 읍장·면장·동장이 제2항에 따라 이장 및 통장을 임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 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③ 삭제 <2013. 7. 16.>

- 제38조(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업무편람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재정의 운용 여건, 지방재정체도의 개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필요한 정보로 구성된 회계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업무편람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할 수 있다.

- ②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회계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지출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시행 2017. 7. 26.] [행정안전부령 제1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제4항 및 제38조제2항에 따라 성과중심의 지방재정운용과 회계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기준경비)**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다음 연도 기준경비를 해마다 7월 31일 까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하여야 하는 기준경비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추진비
2. 지방보조금
3. 지방의회 관련 경비 중 국외여비(國外旅費),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및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4. 통장·이장·반장의 활동보상금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③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한 기준경비의 범위에서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시행 2024. 7. 30.] [행정안전부훈령 제358호, 2024. 7. 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지방재정법」 제5조에 따른 사업예산 성과관리와 「지방재정법」 제38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등의 과목구분과 설정에 대한 사항을 사업예산 체계로 분류·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기준경비)**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의회 관련 경비 중 의원국외여비·의정운영공통경비·의회운영업무추진비·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의원정책개발비의 기준경비는 별표 1과 같다.
2. 업무추진비의 기준경비는 별표 2와 같다.
3. 지방보조금의 기준경비는 별표 3과 같다.
4.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의 기준경비는 별표 4와 같다.
5.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제5호에 따라 지방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기준경비는 별표 5, 일·숙직비의 기준경비는 별표 6, 교육강사수당의 기준경비는 별표 7, 행사 차출 지급경비는 별표 7의 1과 같다.

## 별표 4

###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

- ① 경비성격: 통장·이장·반장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 ② 기준액
  - 통·리장: 기본수당 월 400,000원 이내, 상여금 연 200% 회의참석수당 1회당 20,000원(월 2회)
  - 반장수당 : 연 50,000원

#### □ 「건강검진기본법」

[시행 2020. 9. 12.] [법률 제17472호, 2020. 8. 11., 타법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강검진”이란 건강상태 확인과 질병의 예방 및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제2호에 따른 건강검진기관을 통하여 진찰 및 상담, 이학적 검사, 진단검사, 병리검사, 영상의학 검사 등 의학적 검진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2. “건강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한다)”이란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하기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지정을 받아 건강검진을 시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국가건강검진”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건강검진으로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모자보건법」에 따른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
  - 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
  - 다. 「학교보건법」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건강검사
  - 라.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청소년 건강진단
  - 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 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일반건강진단
  - 사. 「의료급여법」에 따른 건강검진
  - 아. 「암관리법」에 따른 암검진
  - 자. 「노인복지법」에 따른 건강진단
  - 차.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건강검진
4. “건강검진자료(이하 "검진자료"라 한다)”란 국가건강검진을 통하여 얻은 개인의 신상정보로서 문진·진찰·의사소견 및 각종 검사결과 등 건강검진에 관한 문서 또는 광·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한 부호·문자·음성 및 영상 등의 자료를 말한다.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하여 국가건강검진을 실시·지원함으로써 질병을 조기에 발견·진단·치료하고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성·연령별 건강위험을 고려하여 국가건강검진을 계획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건강검진 실시와 관련된 안내 및 건강검진의 결과를 당사자에게 적절한 방식으로 제공함으로써 건강검진의 효과를 높이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켜야 한다.

**제24조(국가건강검진의 비용)** 국가건강검진의 진찰, 상담 및 검사에 사용되는 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으로 정한 수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25조(국가건강검진 수검자 의료비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수검자에 대하여 확진을 위한 정밀검사, 건강위험평가 및 흡연·음주·운동·영양·비만 등 생활습관개선에 사용되는 의료비를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 지급의 대상·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58호, 2024. 1. 9.,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3조(보험자)** 건강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2조(건강검진)** ① 공단은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 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종류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건강검진: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20세 이상인 피부양자

2. 암검진: 「암관리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암의 종류별 검진주기와 연령 기준 등에 해당하는 사람

3. 영유아건강검진: 6세 미만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

③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검진항목은 성별, 연령 등의 특성 및 생애 주기에 맞게 설계되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횟수·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4. 7. 10.] [대통령령 제34497호, 2024. 5. 7., 일부개정]

**제25조(건강검진)** ① 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이하 “건강검진”이라 한다)은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되, 사무직에 종사하지 않는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실시한다. 다만, 암검진은 「암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영유아건강검진은 영유아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검진주기와 검진횟수를 다르게 할 수 있다.

② 건강검진은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강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해야 한다.

③ 공단은 건강검진을 실시하려면 건강검진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 호

의 구분에 따라 통보해야 한다.

1.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 직장가입자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의 경우에는 해당 사용자에게,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의 경우에는 검진을 받는 사람에게 통보

2. 영유아건강검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영유아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의 경우에는 그 직장가입자에게, 지역가입자인 영유아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의 경우에는 해당 세대주에게 통보

④ 건강검진을 실시한 검진기관은 공단에 건강검진의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공단은 이를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검진기관이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에게 직접 통보한 경우에는 공단은 그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⑤ 건강검진의 검사항목, 방법, 그에 드는 비용, 건강검진 결과 등의 통보 절차, 그 밖에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5-50
----------	---------

제출자	거창군수
-----	------

## 1. 제안이유

시설이용료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야영장 이용료를 현실화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수승대관광지의 효율적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시설이용료 감면대상의 신설 및 삭제(안 제5조, 별표 3)

- 1) 신설: 거창군 디지털 관광주민증 소지자, 거창군에서 소비활동을 한 야영장 이용자, 보훈보상대상자
- 2) 삭제: 65세 이상 노인

나. 시설이용료 현실화(안 별표 1)

- 1) 야영데크: 15,000원 ⇒ 30,000원
- 2) 오토캠핑장: 30,000원 ⇒ 50,000원
- 3) 썰매장 이용료 징수대상 확대: 7세 이상 ⇒ 36개월 이상

라. 법령 재기재 삭제, 용어순화·제도개선(안 제4조·제6조·제10조, 별표 2)

##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관광진흥법」 제67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5. 3. 5.~3. 25.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5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거창군에서 발급한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소지한 사람

제4조제2항 중 “사용”를 “이용”으로 한다.

제5조제3항·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 각 호”를 “제3항·제4항전단”으로 한다.

③ 썰매장과 야영장의 이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거창군에서 소비활동을 한 야영장 이용자에게 별표 3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과 중복 감경할 수 없다.

제6조제6호 중 “경우”를 “경우.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과 동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별표 1 나목 및 다목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하며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 중 “사용”을 “이용”으로 각각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b>제2조(정의)</b>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li> <li>2.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li> <li>3. “군인”이란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의무경찰을 포함)을 말한다.</li> <li>4. “단체”란 3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li> </ol> <p><b>제4조(시설이용료)</b> ① 시설이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되, 주차장 이용료는 「거창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별표 1에 따른다.</p> <p>② 축제극장 <u>사용</u>·변경·취소 신청서식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른다.</p> <p>③ 이미 납부한 시설이용료에 대한 반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p> <p><b>제5조(시설이용료 감면)</b> ① 주차장 이용료 감면은 「거창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9조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면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관광지 거주자의 소유 자동차</li> <li>2. 관광지 내 음식점·숙박업소·카페 등을 이용하는 사람의 자동차</li> <li>3.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다만, 야영장은 야영장 하나당 자동차 한 대만 면제한다)</li> </ol> <p style="text-align: right;"><b>&lt;신 설&gt;</b></p>	<p><b>&lt;삭 제&gt;</b></p> <p><b>제4조(시설이용료)</b> ① 시설이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되, 주차장 이용료는 「거창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별표 1에 따른다.</p> <p>② 축제극장 <u>이용</u>·변경·취소 신청서식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른다.</p> <p>③ 이미 납부한 시설이용료에 대한 반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p> <p><b>제5조(시설이용료 감면)</b> ① 주차장 이용료 감면은 「거창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9조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면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관광지 거주자의 소유 자동차</li> <li>2. 관광지 내 음식점·숙박업소·카페 등을 이용하는 사람의 자동차</li> <li>3.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다만, 야영장은 야영장 하나당 자동차 한 대만 면제한다)</li> <li>4. 거창군에서 발급한 디지털 관광주</li> </ol>

4. 그 밖에 관광지 활성화 등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경우

② 축제극장을 이용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제극장 이용료를 면제한다.

1. 거창국제연극제 준비, 행사개최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공공목적 등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썰매장, 야영장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다만,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경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6의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6의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의4.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

민증을 소지한 사람

5. 그 밖에 관광지 활성화 등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경우

② 축제극장을 이용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제극장 이용료를 면제한다.

1. 거창국제연극제 준비, 행사개최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공공목적 등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③ 썰매장과 야영장의 이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7.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과 장애인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8.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 노인

9.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10.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11. 24세 이하 자녀를 둘 이상 둔 다자녀 가정

12. 「거창군 병역명문가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13. 「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14.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④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감대상자는 경감사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하나만 적용할 수 있다.

⑤ 제1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감면 대상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제6조(입장거절과 퇴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5. (생략)

6. 야영장이나 야외 물놀이 시설에 반려동물을 데리고 들어가는 경우  
<신 설>

7.·8. (생략)

④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거창군에서 소비활동을 한 야영장 이용자에게 별표 3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과 중복 감면할 수 없다.

⑤ 제1항 각 호 및 제3항·제4항전단에 해당하는 감면 대상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제6조(입장거절과 퇴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5. (현행과 같음)

6. 야영장이나 야외 물놀이 시설에 반려동물을 데리고 들어가는 경우.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과 동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8. (현행과 같음)

제10조(준용) 시설이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삭 제>

[별표 1] 시설이용료 기준

나. 야영장 이용료

(단위: 원)

구분	야영테크	오토캠핑장
이용료	15,000	30,000
	<u>30,000</u>	<u>50,000</u>

다. 썰매장 이용료

(단위: 원)

구분	어린이	청소년·군인	어른
개인	6,000	7,000	8,000
단체	5,000	6,000	7,000

[비고] <신 설>

- 1) “어린이”란 36개월 이상 13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2) “청소년”이란 14세 이상 19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 학생을 말한다.
- 3) “군인”이란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의무경찰을 포함)을 말한다.
- 4) “단체”란 3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별표 2]

시설이용료 반환 기준

구분	반환 기준
<p>1. 공익상 필요 또는 군수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예약을 취소할 때</p> <p>가. <u>이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u></p> <p>나. <u>이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u></p> <p>다. <u>이용예정일 그날 취소</u></p>	<p>가. <u>이용료 전액 반환</u></p> <p>나. <u>이용료 전액 반환 및 총이용료의 10퍼센트 배상</u></p> <p>다. <u>이용료 전액 반환 및 총이용료의 20퍼센트 배상</u></p>
<p>2. 이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로 예약을 취소할 때</p>	<p>이용료 전액</p>
<p>3. <u>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한 경우</u></p> <p>가. <u>이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u></p> <p>나. <u>계약체결 그날 취소</u></p> <p>다. <u>이용예정일 4일~2일 전까지 취소</u></p> <p>라. <u>이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u></p> <p>마. <u>이용예정일 그날 <u>이용시간 전</u> 취소</u></p>	<p>가. <u>이용료 전액</u></p> <p>나. <u>이용료 전액</u></p> <p>다. <u>이용료의 80퍼센트</u></p> <p>라. <u>이용료의 70퍼센트</u></p> <p>마. <u>이용료의 50퍼센트</u></p>

- 1) 2일을 한 번에 예약 후 취소할 경우 반환기준일은 예약 첫날로 한다.
- 2) 반환기준 시간은 24시로 한다.
- 3) 반환은 7일 이내로 한다.
-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별표 3] <신 설>

1. 썰매장과 야영장의 이용료 감면기준

대상	감면율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바.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차. 「 <u>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u> 」 제54조의5에 해당하는 사람<신 설> 카.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과 장애인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타. 「 <del>노인복지법</del> 」에 따라 <del>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 노인</del> <삭 제> 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파.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하. 24세 이하 자녀를 둘 이상 둔 다자녀 가정 거. 「거창군 병역명문가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너. 「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100분의 50
더.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100분의 30
러. 거창군에서 발급한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소지한 사람 <신 설>	100분의 10

-비고: 경감사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하나만 적용할 수 있다.

2. 거창군에서 소비활동을 한 경우 야영장의 이용료 감면기준 <신 설>

소비금액	감면율
가. 5만원 이상	100분의 10
나. 10만원 이상	100분의 20
다. 20만원 이상	100분의 30
<p>[비고]</p> <p>1) 감면인정 서류: 야영장 이용일 그날부터 3일간 거창군에서 소비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p> <p>2) 감면은 한 차례 일괄 적용</p>	

## 관련법령

### □ 「관광진흥법」

[시행 2021. 6. 23] [법률 제17704호, 2020. 12. 22, 일부개정]

**제52조(관광지의 지정 등)** ① 관광지 및 관광단지(이하 “관광지등”이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다만,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관광지등을 지정하려면 사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같은 법의 규정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지역인 경우에는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에 따라 준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을 관광지등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항 본문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회신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⑤ 관광지등의 지정 취소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은 관광지등의 지정에 관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면적의 변경은 제2항 본문에 따른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지정, 지정취소 또는 그 면적변경을 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67조(입장료 등의 징수와 사용)** ① 관광지등에서 조성사업을 하거나 건축, 그 밖의 시설을 한 자는 관광지등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고, 관광시설을 관람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관람료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관람료 또는 이용료의 징수 대상의 범위와 그 금액은 관광지등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입장료·관람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하면 이를 관광지등의 보존·관리와 그 개발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69조(관광지등의 관리)** ① 사업시행자는 관광지등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필요하면 관광사업자 단체 등에 관광지등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7. 18.] [법률 제19228호, 2023. 3. 4., 타법개정]

제54조의5(고궁 등의 이용지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1.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
2. 제54조의4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람, 그 유족 또는 가족

[본조신설 2023. 1. 1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7. 18.] [법률 제19221호, 2023. 1. 17.,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보훈보상대상자 등에게도 국가의 양로시설과 양육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공공기관 등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하도록 하며,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이하 생략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의5(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법 제54조의5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해야 한다.

1.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배우자
2. 법 제54조의4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람과 그 배우자
3. 보훈보상대상자와 법 제54조의4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유족 중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법 제54조의4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4. 보훈보상대상자와 법 제54조의4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람 중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9의2와 같다.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제86조제1항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제1항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포함한다)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7. 11.]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의2] <신설 2023. 7. 11.>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67조의5제2항 관련)

시설의 종류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고궁 및 능원	100분의 100
2. 국공립 공원	100분의 100
3. 독립기념관	100분의 100
4. 전쟁기념관	100분의 100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100분의 100
6. 국공립 수목원	100분의 100
7. 국공립 자연휴양림	100분의 100
8.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은 제외한다)	100분의 50
9.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100분의 50

□ 「지방자치법」

[시행 2023. 9. 22.] [법률 제19241호, 2023. 3. 21., 일부개정]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57조(사용료 등의 부과·징수, 이의신청)**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은 공평한 방법으로 부과하거나 징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나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 알려야 한다.

④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나 징수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제3항에 따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결정기간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⑥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90조와 제94조부터 제10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그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859호, 2023. 12. 29., 일부개정]

**제90조(이의신청)**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적어 특별시세·광역시세·도세[도세 중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특별자치시세·특별자치도세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시·군·구세[도세 중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4조(청구기한의 연장 등)** ① 이의신청인 또는 심판청구인이 제2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유(신고·신청·청구 및 그 밖의 서류의 제출·통지에 관한 기한연장사유로 한정한다)로 인하여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기간에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 또는 청구인은 그 기간 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던 사유,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및 소멸한 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기한까지 우편으로 제출(제25조제1항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이의신청서 또는 심판청구서가 신청기간 또는 청구기간이 지나서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일에 적법한 신청 또는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③ 제90조 및 제91조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95조(보정요구)** ① 이의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신청의 서식 또는 절차에 결함이 있는 경우와 불복사유를 증명할 자료의 미비로 심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20일간의 보정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그 결함의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정을 요구받은 이의신청인은 문서로 결함을 보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출석하여 보정할 사항을 말하고, 말한 내용을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기록한 서면에 서명하거나 날인함으로써 보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은 제96조에 따른 결정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96조(결정 등)** ① 이의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147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정을 하고 신청인에게 이유를 함께 기재한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이의신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7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할 수 있다.

1.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때(행정소송,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제기하고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이의신청 기간이 지났거나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할 때: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

2.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

3.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 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 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 다만, 처분의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은 해당 처분청을 기속(羈束)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해당 처분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 일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청은 제83조 또는 제84조에 따라 조사를 연기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26.>

⑤ 처분청은 제1항제3호 단서 및 제4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재조사 결과 신청인의 주장과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의 대상이 된 당초의 처분을 취소·경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제1항제3호 단서,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조사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제3절을 준용한다.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지방세법」 제91조, 제103조, 103조의19, 103조의34, 103조의41 및 제103조의47에 따른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산정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제97조(결정의 경정)** 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오기, 계산착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권으로 또는 이의신청인의 신청을 받아 결정을 경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정의 세부적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제1항 및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지방세심의위원회”로 본다.

②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89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심판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제100조에 따라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을 말한다)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 본문에 따른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00조에 따라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결정기간(이하 이 조에서 “결정기간”이라 한다)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⑤ 제3항 단서에 따른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1. 이 법에 따른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하는 경우: 재조사 후 행한 처분청의 처분의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다만, 제100조에 따라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65조제5항에 따른 처분기간(제100조에 따라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65조제5항 후단에 따라 조사를 연기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를 중지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내에 처분청의 처분 결과 통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이 법에 따른 심판청구를 거쳐 제기하는 경우: 재조사 후 행한 처분청의 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다만,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⑥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거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심판청구를 거친 것으로 보고 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9. 12. 31.>

⑦ 제4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신설 2019. 12. 31.>

**제99조(청구의 효력 등)** ①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②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에 관한 심의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2. 31.>

제100조(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준용)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등의 사항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을 준용한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 2025. 1. 24.] [법률 제20111호, 2024. 1. 23., 일부개정]

제40조(장애인 보조견의 훈련·보급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을 보조할 장애인 보조견(補助犬)의 훈련·보급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하여 장애인 보조견표지(이하 “보조견표지”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보조견의 훈련·보급을 위하여 전문훈련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⑤ 보조견표지의 발급대상, 발급절차 및 전문훈련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5-51
----------	---------

제출자	거창군수
-----	------

## 1. 제안 이유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수준을 높이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인상함(안 제10조)

- 1) 현행: 월 15만원
- 2) 변경: 월 18만원

나. 용어 등을 정비함(안 제2조·제10조, 장 삭제)

##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1)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지방재정법」 제17조
- 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나. 예산조치: 2025년 예산 607.5백만원 확보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5. 3. 18.~3. 24.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붙임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의 “제1장 총칙”을 삭제한다.

제2조제6호 중 “전몰군경”을 “전몰군경유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독립유공자유족”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4조 앞의 “제2장 예우 및 지원”을 삭제한다.

제10조 앞의 “제3장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의 지급 등”을 삭제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명예수당 등 지급)** 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지급일 현재 군에 주소를 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명예수당

가. 참전유공자: 월 18만원

나. 전몰군경유족: 월 15만원

다. 독립유공자유족: 월 15만원

라. 가목부터 다목을 제외한 국가보훈대상자(다만, 중복지원할 수 없음): 월 7만원

2.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 50만원

제14조 앞의 “제4장 보칙”을 삭제한다.

제16조를 제15조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참전명예수당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5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u>제1장 총칙</u></p> <p><b>제2조(정의)</b>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생략)</li> <li>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li> <li>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li> <li>4. “보훈단체”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단체를 말한다.</li> <li>5.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li> <li>6. “전몰군경”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li> </ol> <p style="text-align: right;"><u>&lt;신 설&gt;</u></p>	<p><u>&lt;삭 제&gt;</u></p> <p><b>제2조(정의)</b>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현행과 같음)</li> <li>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li> <li>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li> <li>4. “보훈단체”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단체를 말한다.</li> <li>5.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li> <li>6. “전몰군경유족”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li> <li>7. “독립유공자유족”란 「독립유공자에 우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li> </ol>
<p><u>제2장 예우 및 지원</u></p>	<p><u>&lt;삭 제&gt;</u></p>
<p><u>제3장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의 지급 등</u></p>	<p><u>&lt;삭 제&gt;</u></p>
<p><b>제10조(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①</b> 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지급일 현재</p>	<p><b>제10조(명예수당 등 지급)</b> 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지급일 현재 군에</p>

현행	개정안
<p>군에 주소를 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명예수당</p> <p>가.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p> <p>나. 전몰군경유족 명예수당: 전몰군경의 유족</p> <p>다. 독립유공자유족 명예수당: 독립유공자 유족</p> <p>라. 보훈명예수당: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다만 중복지원할 수 없다.</p> <p>1) 가목부터 다목을 제외한 국가보훈대상자</p> <p>2)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p> <p>2. 사망위로금: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p> <p>② 제1항에 따른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의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명예수당</p> <p>가. 참전명예수당, 전몰군경유족 명예수당: 월 15만원</p> <p>나. 독립유공자유족 명예수당: 월 15만원</p> <p>다. 보훈명예수당: 월 7만원</p> <p>2. 사망위로금: 50만원</p> <p>제4장 보칙</p> <p>제16조(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군수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의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p>	<p>주소를 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명예수당</p> <p>가. 참전유공자: 월 18만원</p> <p>나. 전몰군경유족: 월 15만원</p> <p>다. 독립유공자유족: 월 15만원</p> <p>라. 가목부터 다목을 제외한 국가보훈대상자(다만, 중복지원할 수 없음): 월 7만원</p> <p>2.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 50만원</p> <p>&lt;삭 제&gt;</p> <p>제15조(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군수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의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p>

#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I. 비용추계 요약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 지급

나. 관련 조문: 안 제10조

###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합계
군비	624	660	660	660	660	

##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306명\*18만원\*12개월=660백만원

작성자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 관련법령

### □ 「지방자치법」

[시행 2023. 9. 14.] [법률 제19699호, 2023. 9. 14., 일부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카.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
  -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가.~하. (생략)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가.~더. (생략)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가.~마. (생략)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가.·나. (생략)
7. 국제교류 및 협력  
가.·나. (생략)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 「지방재정법」

[시행 2023. 5. 16.] [법률 제19031호, 2022. 11. 15., 일부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 7. 16.>

####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8. 14.] [법률 제20282호, 2024. 2. 13., 일부개정]

**제6조(참전명예수당)**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는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수당지급 대상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참전명예수당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급여금 또는 수당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 3. 4.>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7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지급받는 경우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지급받는 경우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② 참전명예수당은 제1항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연령이 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5조의2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참전명예수당 지급연령이 지난 후에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③ 참전유공자가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도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참전명예수당은 수당지급 대상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이하 “체신관서”라 한다)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입금하는 방

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손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수당지급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⑤ 제4항 본문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수당지급 대상자가 본인 명의로 참전명예수당만 입금될 수 있는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예금계좌로 참전명예수당을 입금하여야 한다.

⑥ 미지급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준용한다.

⑦ 참전명예수당은 월액(月額)으로 지급하며, 그 지급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 12. 22.]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1. 14.] [대통령령 제35204호, 2025. 1. 14., 일부개정]

제7조(참전명예수당의 지급액)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의 지급금액은 월 45만원으로 한다. <개정 2004. 1. 17., 2006. 1. 13., 2008. 1. 22., 2010. 2. 4., 2010. 12. 31., 2013. 1. 14., 2014. 1. 14., 2015. 1. 12., 2016. 1. 7., 2016. 12. 30., 2017. 12. 29., 2020. 1. 7., 2021. 1. 5., 2022. 1. 13., 2022. 9. 20., 2023. 1. 13., 2024. 1. 12., 2025. 1. 14.> [적용 2006. 1. 1.부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1. 14.] [대통령령 제35204호, 2025. 1. 14.,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42만원에서 45만원으로 인상함으로써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수준을 높이려는 것임.

제7조 중 "42만원"을 "45만원"으로 한다.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8. 14.] [법률 제20280호, 2024. 2. 13., 일부개정]

제4조(적용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순국선열: 일제의 국권침탈(國權侵奪)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建國勳章) · 건국포장(建國褒章)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2. 애국지사: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 · 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전문개정 2008. 3. 28.]

제6조(등록 및 결정) ①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이 법의 적용 대

상자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4.>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독립유공자의 요건과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의 요건을 확인한 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한다. 다만,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2., 2023. 3. 4.>

③ 삭제 <2015. 12. 22.>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적용 대상 독립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본인 및 제5조에 따른 유족 등이 없어 등록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독립유공자로 기록하고 예우 및 관리를 할 수 있다. <신설 2016. 5. 29., 2023. 3. 4.>

[전문개정 2008. 3. 28.]

#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5-52
----------	---------

제출자	거창군수
-----	------

##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별 조례로 상이하게 규율되어 있는 공립요양병원의 설치·운영 근거를 국가차원의 일관성 있는 의료행정을 도모하기 위해 「치매관리법」에 신설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공립요양병원의 설치 근거를 정비함(안 제1조·제2조)

1) 설치 근거에 「치매관리법」 제16조의3을 명시함

나. 법령 재기재 사항 등을 정비함

1) 위탁 대상 및 취소사유 삭제(안 제4조·제12조)

2) 공유재산 사용, 준용, 시행규칙 삭제함(현행 제9조·제13조·제14조)

3) 근거: 「치매관리법」 제16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4, 「공유재산법」 제24조, 「지방자치법」 제29조

##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치매관리법」 제16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4, 「지방자치법」 제161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5. 3. 7.~3. 24.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명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거창군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진료와 요양을 위하여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등)**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매관리법」 제16조의3에 따라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이하 “노인요양병원”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② 노인요양병원은 거창군 거창읍 운정3길 180에 둔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장한다.”를 “수행한다.”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위탁 운영)** 군수는 노인요양병원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u>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u></p> <p><u>제1조(목적)</u> 이 조례는 치매 및 노인성 질환자의 진료와 요양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61조 및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u>제2조(위치)</u>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이하 “노인요양병원”이라 한다)은 거창군 거창읍 운정3길 180에 둔다.</p> <p><u>제3조(업무)</u> 노인요양병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치료 및 운영에 대한 계획 수립</li> <li>2.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 및 입원 진료</li> <li>3.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장·단기적인 요양 서비스</li> <li>4. 그 밖에 치매 및 노인성질환에 관련된 사업</li> </ol> <p><u>제4조(설치·운영)</u> ① 군수는 노인요양병원을 설치·운영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할 수 있으며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계약갱신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의료법인(법인의 대표자는 병원급</li> </ol>	<p><u>거창군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u></p> <p><u>제1조(목적)</u> 이 조례는 치매 및 노인성 질환자의 진료와 요양을 위하여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u>제2조(설치 등)</u>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매관리법」 제16조의3에 따라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이하 “노인요양병원”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p> <p>② 노인요양병원은 거창군 거창읍 운정3길 180에 둔다.</p> <p><u>제3조(업무)</u> 노인요양병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치료 및 운영에 대한 계획 수립</li> <li>2.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 및 입원 진료</li> <li>3.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장·단기적인 요양 서비스</li> <li>4. 그 밖에 치매 및 노인성질환에 관련된 사업</li> </ol> <p><u>제4조(위탁 운영)</u> 군수는 노인요양병원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p>

이상 의료기관을 3년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사람) 및 종합병원을 2년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민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병원을 개설 할 수 있는 사람

3. 의사로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10년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9조(공유재산 사용)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제12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병원 운영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삭 제>

1. 수탁자가 병원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2. 수탁자가 운영 약정사항을 위반한 때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 및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삭 제>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 관련법령

### □ 「치매관리법」

**제16조의3(공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이하 “공립요양병원”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립요양병원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운영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립요양병원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공립요양병원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공립요양병원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부지 또는 건물 등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기부채납한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⑤ 공립요양병원 운영의 위탁기간은 그 위탁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운영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 단위로 위탁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공립요양병원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공립요양병원을 위법 또는 부당하게 운영하거나 위탁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2. 부도, 파산, 해산, 의료인의 면허자격 정지 또는 취소, 의료업에 관한 허가 정지 또는 취소 등의 사유로 공립요양병원의 위탁 운영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2항에 따른 운영평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4. 제6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시정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위탁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수탁자에게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치매관리법

[시행 2018. 12. 13.] [법률 제15649호, 2018. 6. 12., 일부개정]

### ◇ 개정이유

~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치매 등 노인성 질병에 대한 진료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립요양병원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별 조례로 상이하게 규율되고 있으므로 국가 차원의 일관성 있는 의료행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립요양병원의 설치·운영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가. (생략)

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립요양병원 설치·운영 및 운영 위탁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운영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계약을 5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도록 함(제16조의3 신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립요양병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 중인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은 이 법에 따른 공립요양병원으로 본다.

제3조(공립요양병원의 운영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자치단체가 공립요양병원의 운영을 위탁 중인 경우 종전의 위탁계약은 이 법에 따른 것으로 보되, 위탁기간은 종전의 위탁계약 체결 당시 계약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4(공립요양병원 운영 위탁) ① 법 제16조의3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개정 2021. 6. 30.>

1. 「의료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을 3년 이상 운영했거나 운영하고 있는 법인
2.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중 신경과, 신경외과,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한방신경정신과의 전문의로서 같은 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을 3년 이상 운영했거나 운영하고 있는 사람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준정부기관이 개설한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5.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16조의3제3항에 따른 공립요양병원의 운영을 위탁하기 위한 계약(이하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를 마련해야 한다.

□ 「지방자치법」

- 제161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90호, 2024. 1. 9., 타법개정]

- 제20조(사용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는 경우
  - 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사용·수익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거나 행정재산의 원상(原狀) 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면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제25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행정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인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
3.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4.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의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0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5. 2. 21.] [대통령령 제35246호, 2025. 2. 7., 타법개정]

**제13조(사용허가의 방법)**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일반입찰,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를 이용하여 입찰공고 및 개찰·낙찰 선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일반입찰,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은 사용료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에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공법인·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2. 일단(一團)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업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3. 청사(廳舍)의 구내재산을 공무원 후생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재산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4. 법률에 따라 해당 재산의 무상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의 유상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5. 법 제24조제1항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면제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6. 사용허가의 신청 당시 제31조제2항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해서 산출한 가격(행정재산 중 일부에 대해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재산 전체의 가격을 말한다)이 1천만원(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에 소재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7.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8.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9.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10.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하려는 자가 신축기간 동안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1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의 복구 및 구호 목적을 위해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12. 공익사업을 위하여 자진철거를 전제로 하여 임시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13.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1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이라 한다) 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15. 지방자치단체와 재산을 공유하는 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16. 지방자치단체의 현재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공유재산의 공중·지하에 건물이 아닌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17. 공유재산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에 창업을 위한 사무실 또는 사업장 등 창업 공간(창업보육센터는 제외하며, 이하 “창업공간”이라 한다)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1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 또는 단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구 또는 단체에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 가. 국제기구(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전문기구, 정부 간 기구, 준정부 간 기구를 말한다)
    - 나.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민간단체
  19.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사람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20.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2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의 창업을 위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22.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기업 또는 조합에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 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23.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서 청년 친화적 근로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업에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24. 제1호부터 제2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행정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 ④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자로 한정하여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2. 재산의 위치·형태·용도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자로 한정하여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⑤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의 용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재산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2. 제3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사용허가를 받을 자를 지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제19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방법과 우선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정하여 1명 이상에게 일수별 또는 시간별로 하나 이상의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사용료 감면)** ①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료 면제기간은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을 연간 사용료로 나눈 연수(年數)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식재산(이하 “지식재산”이라 한다)의 사용료 면제기간은 20년으로 한다.

③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기부채납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인 그 부지의 사용료를 제1항의 연간 사용료에 합산한다. 다만, 부지 사용료를 따로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과 제3항에 따라 연간 사용료에 합산할 부지 사용료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부지의 가액은 최초의 사용허가 당시를 기준으로 제31조를 준용하여 산출하며, 사용료는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⑤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2의2.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4. 제13조제3항제8호 및 제14호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5. 「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지방자치단체조합”이라 한다)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조합에 사용허

가를 하는 경우

⑥ 법 제24조제2항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제13조제3항제8호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한 경우
2. 제13조제3항제21호·제22호 또는 제23호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한 경우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다만, 법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허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4.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한 경우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1. 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
2. 제6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3. 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0

## □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길라잡이 P342

### 2. 자치법규의 제명

#### 가. 자치법규 제명의 결정 원칙과 표현방식

- 4) 자치법규의 제명은 자치법규마다 고유한 것이므로 다른 자치법규의 제명과 같은 수 없으며, 다른 자치법규와 혼동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한 동일한 제명의 조례와 혼동되지 않도록 원칙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조례의 제명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 거창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출·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5-53
----------	---------

제출자	거창군수
-----	------

## 1. 제안 이유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부담금 비용 부담에 대한 신뢰도 향상과 수도사업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원인자부담금을 정의함(안 제2조)

나. 손괴자 등의 의무, 군수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제4조)

다. 원인자 부담금 부과 대상 및 범위, 산정기준을 정함(안 제5조·제6조)

라. 부과·징수, 다수의 원인자, 정산, 과오납 처리, 공사 시행자를 정함  
(안 제7조~제11조)

##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수도법」 제71조, 「수도법 시행령」 제65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5. 2. 28.~3. 21.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거창군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출·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거창군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출·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거창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출·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거창군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담하게 하는 비용을 말한다.

1. 수돗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수돗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포함한다)
2.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해 이미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과 수선·철거 등이 필요한 경우에 그 필요한 비용을 해당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3. 수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비용이나 파손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제3조(손괴자 등의 의무)** ① 다른 공사나 다른 행위로 수도시설을 파손한

자는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은폐하거나 자체 보수해서는 아니 된다.

② 다른 공사나 다른 행위를 하는 자가 직접 수도시설을 파손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누수 등 수도시설의 파손을 확인하였을 경우에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방관하거나 자체 보수해서는 아니 된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수도시설이 파손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파손한 자 확인 및 비용부담 여부에 관계없이 인력과 장비 등을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군수는 수도시설의 파손 또는 파손으로 인한 다른 시설물과 다른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고원인·정황·피해 및 현장사진 등을 확보하거나 파손한 자의 파손확인서 수령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전조치를 해야 한다.

③ 군수는 수도시설 파손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하터파기 등 다른 공사를 하는 자에게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조(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 및 범위)** ① 제2조제1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별표 1의 대규모 개발사업: 수돗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기존 수도시설을 이용하거나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해당 원인자부담금(기존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및 원인이자가 유발하는 추가공사비)을 부담시키는 경우

2. 제1호 외의 규모 미만의 개발사업: 급수구역 내외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 기존에 든 수도시설의 건설비를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건축물의 증축·개축 등으로 추정 사용량이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추정 사용량 증가 시에는 증가된 추정 사용량에 한정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

② 제2조제2호·제3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에는 영 제65조제5항 각 호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원상복구비에는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 수수료를 포함한다.

1. 파손예방을 위한 시설의 비용
2. 파손으로 다른 시설물 및 재산상 피해에 대한 피해배상금
3. 지원경비

제6조(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음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산출
3.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
4. 원인자부담금 결정 후 신청자의 계획 변경, 수돗물 사용량 변경이나 수도시설 공사비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변경된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부과함
5. 배수지에서 원인자의 사업장 위치까지 용수를 공급할 배수관경 및 가압장 시설용량 등은 군수와 협의 결정함

② 제5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수도시설의 원상복구비, 도로복구비 등의 산정은 제1항을 준용함
2. 누수 및 퇴수로 손실된 수돗물의 양과 급수차로 공급한 수돗물에 대한 비용의 산정은 「거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 별표 2에 따른 업종별 상수도 요금 산출기준에 따르며, 누수량 및 퇴수량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름
3. 급수운반 시 사용된 차량의 비용은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단가에 따르고, 그 외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금액을 준용하여 사용함
4. 도로결빙 방지비용은 차량경비, 염화칼슘, 모래 등의 재료비와 인건비를 합한 금액으로 함
5. 출장경비는 원상복구 작업 등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에 대한 경비로 차량비는 화물자동차 운송료에 준하고 직원경비는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 식비와 여비로 함
6. 지원경비는 군 외의 자가 지원한 모든 경비로서 지원한 자가 청구한

금액에 한정하여 산정함

7. 홍보비는 군민에게 단수시간 등을 언론기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홍보할 때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함
  8. 작업시간은 출동시간부터 작업완료 후 1시간까지로 계산한다. 다만, 1일 작업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함
- ③ 군수는 긴급한 재해복구 등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제7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공사 시행 전 군수에게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및 첨부하여 수도공사를 요청해야 한다.

② 군수는 수도공사의 원인자에게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총금액을 우선 부과·징수 후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공사는 우선 복구 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시설의 설치비용 등을 산출한 후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수도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내야 할 금액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산금의 징수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⑤ 원인자부담금은 현금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8조(다수의 원인자)** ① 군수는 파손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그 손괴에 책임이 있는 비율로 분할하여 부과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에게 균분하여 부과할 수 있다.

1. 다수인이 공동의 행위로 수도시설을 개조, 이설, 파손한 경우
2. 해당 수도공사나 파손의 성격상 각 다수인이 기여한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제9조(원인자부담금 등의 정산)** ①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제7조에 따라 부과한 금액과 차이가 발생했을 때에는 이를 반환 또는 추가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정산하여 차액을 반환 또는 추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유 및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반환 또는 추가 납부절차 등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10조(과오납 처리)** ①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금이 착오 등으로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담자에게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해야 할 경우 제9조제2항에 따라 통지한다.

**제11조(공사 시행자)** ①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시행한다. 다만, 원인자부담공사는 현장여건 등에 필요한 경우 협의에 의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자가 위탁 시행 할 수 있으며, 파손한 자가 부담하는 공사는 상하수도 면허를 소지한 업체를 제외하고는 파손한 자는 시행할 수 없다.  
② 군수는 긴급복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파손한 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원상복구비에서 제외해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인자부담금 산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원인자부담금 산출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대규모 개발사업(제5조제1항제1호 관련)

1. 신축시설

시설유형	부과대상	해당 시설
가. 주거시설	30세대 이상 또는 건축연면적 2,550㎡ 이상인 시설	단독, 다세대, 다가구(원룸형 주택 포함), 공동주택
나. 숙박시설	건축연면적 600㎡ 이상 또는 객실 수 15실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일반숙박시설 2) 관광숙박시설 3) 그 밖에 1) 또는 2)의 시설과 유사한 것
다. 판매·유통·영업시설	건축연면적 1,000㎡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판매 및 영업 시설 2) 위탁시설 3) 자동차 관련시설(다만, 주차장 면적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4)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다만, 축사는 제외한다) 5) 관광휴게시설
라.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건축연면적 2,000㎡ 이상인 다음의 시설(다만, 유치원, 초·중·고교는 제외한다)	1) 학교(대학, 대학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를 말한다) 시설 2) 교육원(연수원을 포함한다) 시설 3) 직원훈련소 시설 4)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 제외한다) 시설 5) 연구소(연구소와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 포함한다) 시설 6) 생활권 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 유스호스텔 등을 말한다) 7) 자연권 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을 말한다)
마. 공장시설	건축연면적 2,000㎡ 이상인 시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공장 설립 승인을 받은 공장으로 물품의 제조, 가공,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공장시설
바. 의료시설	의료시설로서 건축 연면적 1,500㎡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병원(종합병원, 병원, 요양소 등을 말한다) 2)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3) 장례식장
사. 그 밖의 시설	그 밖의 시설로서 건축 연면적 2,000㎡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2)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업무시설 4) 문화 및 집회시설 5) 종교시설 6) 운동시설 7)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8) 교정 및 군사시설 9) 묘지관련시설 10) 관광휴게시설
아. 2개 이상의 복합 용도일 경우	복제4호에 따라 산정한 시설 면적이 주용도의 시설 면적 기준을 초과하는 시설	

## 2. 증축·개축시설(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적용한다)

- 가. 부과대상 시설물 중 기존에 상수도 급수를 받고 있는 시설물의 증축·개축 시에는 기존 시설물을 제외한 증축·개축되는 시설물의 연면적을 적용한다.
- 나. 부과대상 시설물 중 기존에 상수도 급수를 받지 않고 있는 기존 시설물의 증축·개축 시에는 기존 시설물의 연면적과 증축·개축시설물의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제1호 각 목의 부과대상 면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한 연면적을 적용한다.
- 다. 기존 시설물이 부과대상 면적에 미달하고 상수도 급수를 받지 않고 있는 시설물의 증축·개축 시에는 기존 시설물의 연면적과 증축·개축 시설물의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제1호 각 목의 부과대상 면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한 연면적을 적용한다.
- 라. 기존 시설물이 부과대상 면적에 미달하고 상수도 급수를 받고 있는 시설물의 증축·개축 시에는 증축시설물의 연면적이 제1호 각 목의 부과대상 면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한 연면적을 적용한다.
- 마. 1개 시설에 건축물의 용도가 2개 이상일 경우 별표 2의 수돗물 사용량 산정기준에 따라 별도 산정한 후 합산 적용한다.

## 3. 용도변경 시설

- 가.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닌 기존 시설물이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 시설물의 연면적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 나. 원인자부담금을 이미 납부한 기존 시설물이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추가로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산출한 총액에서 이미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을 제외하고 증가한 원인자부담금만 부과한다.
- 다. 용도변경 결과 새로 산출된 원인자부담금이 기존보다 축소되는 경우, 기존에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을 적용하고 차액은 환급하지 않는다.

## 4. 건축물의 용도가 2이상의 복합용도일 경우

건축물 용도가 2이상의 복합용도일 경우에는 주용도를 기준으로 다음 식에 따라 환산하여 합산적용하며 이를 근거로 전체 연면적을 산정한다.

$$\text{주용도 시설의 건축연면적} + \frac{\text{주용도시설의 부과대상기준 건축연면적}}{\text{부속용도시설의 부과대상기준 건축연면적}} \times \text{부속용도 시설의 건축연면적}$$

## 5. 그 밖의 사항

- 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 중 가장 유사한 시설을 적용한다.
- 나. 연면적 산정 시 실제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는 시설(주차시설, 창고시설 등을 말한다)은 연면적에서 제외한다.
- 다.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 중 「건축법」상 건축물 주 용도가 축사, 주차장, 창고시설로 분류되고 구경 20mm 이하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일정규모 미만 개발사업에서 적용하는 구경별 정액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별표 2]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제6조제1항 관련)

1. 대규모 개발사업(제5조제1항제1호)

$$\text{원인자부담금} = [\text{단위사업비}(\text{총자산/시설용량}) \times \text{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사용량}] + \text{추가사업비}$$

가. “단위사업비”란 수도시설 총자산을 시설용량으로 나누어 산정한 수돗물 1세제곱미터당 사업비를 말한다.

- 1) 단위사업비는 최근 건설 완료된 수도시설사업(원수시설, 취수·정수 시설, 송수시설, 배수시설)에 대한 수돗물 1m<sup>3</sup>당 사업비를 말한다.
- 2) “총자산”이란 의회에서 결산 승인된 전년도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서상 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기타가동설비자산액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 3) “시설용량”이란 자체 정수장 용량, 광역배분계획량, 인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급받는 수돗물 양의 총합계를 말한다.

나. “수돗물사용량”이란 부과대상사업의 사업계획서 또는 설계서를 기초로 계산한 인원에 거창군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른 목표연도의 1인당 1일 최대급수량을 곱하여 계산한 양을 말한다.

다. “추가사업비”란 급수구역 내외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증설을 포함한다)하는 송·배수시설(배수지, 가압장, 송·배수관, 밸브 등 부속시설을 포함한다)의 실소요 공사비용(부지매입비, 설계비, 감리비, 시공비 등 총 소요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라. 단위사업비는 거창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되, 기준연도 이후 재적용 시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전년도 연간 생산자물가 상승률을 곱하여 적용한다.

## 2. 제1호에서 정한 규모 미만의 개발사업(제5조제1항제2호)

$$\text{원인자부담금} = [\text{단위사업비}(\text{순자산/시설용량}) \times \text{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사용량}] + \text{추가사업비}$$

가. “순자산”이란 거창군이 투자하지 않은 자산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여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산출한다.

$$\begin{aligned} \text{순자산} = & (\text{가동설비자산} + \text{건설중인 자산} - \text{기부금 누계액}) - (\text{시} \\ & \text{설분담금 누계액} + \text{공사부담금 누계액} + \text{원인자부담금} \\ & \text{누계액} + \text{재평가적립금 누계액}) \times (1 - \text{감가상각누계액}/ \\ & \text{가동설비자산취득가액}) \end{aligned}$$

나. 부과대상 사업의 수돗물사용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1) 최근 3년간의 거창군 상수도 모든 업종의 최근 3년간의 관 구경별 평균 사용량을 기준으로 한다.
- 2) 세부적인 원인자부담금 징수를 위한 수돗물사용량은 군수의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다. 부과대상 사업의 추가사업비, 시설용량, 단위사업비 공고 등은 제1호에서 정한 바를 준용한다.

[별표 3]

누수량 및 퇴수량 산출기준(제6조제2항 관련)

1. 수압 있는 손실수량: 오리피스공식 적용

가. 초당 손실수량:  $Q1 = CA\sqrt{2gh}$  (오리피스공식)

나. 시간당 손실수량

$$Q2 = CA\sqrt{2gh} \times 3600$$

$$= 0.64 \times \frac{a}{10000} \times \sqrt{2 \times 9.8 \times 10p} \times 3600 = 3.2256ap^{1/2}$$

Q1 = 초당 손실수량(m <sup>3</sup> /sec)	Q2 = 시간당 손실수량(m <sup>3</sup> /hr)
C = 유량계수(Ca × Cv)	
Ca = 수축계수(0.666적용)	Cv = 유속계수(0.97적용)
∴ C = 0.666 × 0.97 = 0.64	
A = 면적(m <sup>2</sup> ) = 10,000a(cm <sup>2</sup> )	g = 중력가속도(9.8m/sec <sup>2</sup> )
h = 수두(m) = 10p	p = 수압(kg/cm <sup>2</sup> )
(수두 10m는 수압 1kg/cm <sup>2</sup> 에 해당)	

다. 수압에 의한 누수시간은 누수발생 시각부터 체수 등으로 수압이 "0"으로 되거나 보수가 완료된 시각까지로 하며 퇴수시간은 퇴수변 또는 소화전을 열고 닫는 시각 사이로 한다.

라. 지하로 누수되는 손실수량에 대하여도 위 공식을 적용 산출한다.

2. 수압이 없는 만수된 관내부의 손실수량:  $Q = A \times L$

Q = 손실수량(m <sup>3</sup> )	A = 면적(m <sup>2</sup> )	L = 연장 (m)
---------------------------	-------------------------	------------

3. 정수장 유출량계, 구역유량계 및 그 밖에 적산유량계 등으로 누수량, 퇴수량의 적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유량계에 적산된 값으로 할 수 있다.

## 관련법령

### □ 「수도법」

[시행 2025. 1. 24.] [법률 제20118호, 2024. 1. 23., 일부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4. (생략)

17. “수도시설”이란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한 취수(取水)·저수(貯水)·도수(導水)·정수(淨水)·송수(送水)·배수시설(配水施設), 급수설비, 그 밖에 수도에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18.~23.(생략)

24.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 수요자에게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分岐)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貯水槽)·수도꼭지, 그 밖에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25. “수도공사”란 수도시설을 신설·증설 또는 개조하는 공사를 말한다.

**제71조(원인자부담금)** ①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 기준과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1. 7. 28.>

### □ 「수도법 시행령」

[시행 2025. 3. 11.] [대통령령 제35381호, 2025. 3. 11., 타법개정]

**제65조(원인자부담금)** ①수도사업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등에 대하여 이를 부담할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수도사업자는 수돗물 사용량에 따라 수도공사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그 부담금액을 정할 수 있다.

② 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수도공사 등에 드는 비용을 산출하여 그 금액·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납입고지서에 적어 부담금을 낼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 1. 3.>

③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비용

2.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드는 공사비
  3. 수도시설의 세척 등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4. 단수(斷水)로 인한 급수차 사용경비
  5. 도로복구비와 도로결빙 방지비용
  6. 복구작업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의 경비
  7. 그 밖에 홍보에 든 경비 등
- ④ 수도사업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수도시설의 수선과 유지에 관한 비용이나 손괴 예방을 위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산출하여 부담금의 금액·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납입고지서에 적어 부담금을 낼 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08. 1. 3.>
- ⑤ 제4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2. 제3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용
- ⑥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비용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 1. 3.>

#### □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시행 2024. 12. 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22조에 따라 군의 상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 비용의 부담 구분 및 그 밖에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그 밖에 급수에 관련된 기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 3.~6. (생략)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상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교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의안번호	제25호
의결 연월일	2025. 3. 28. (제4회)

심의의결사항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수도사업소장
제출연월일	2025. 3. 25.

규제혁신담당 심사필

##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5-25
----------	---------

제출연월일	2025. 3. 25.
제 출 자	체육시설사업소장

### 1. 제안이유

제2스포츠타운 구성에 따라 그 시설 이용에 필요한 사용료 기준을 신설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와 군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 최상의 경기장 관리로 각종 경기대회 유치로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제2스포츠타운 설치 근거를 신설함(안 별표 1)
- 나. 제2스포츠타운 사용료 기준을 신설함(안 별표 1의2)
  - 1) 야구장: 100천원, 120천원
  - 2) 축구장: 80천원, 100천원
  - 3) 그라운드골프장: 무료

###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1)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8조,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 2)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61조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5. 3. 10.~3. 24.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별표 1의2 중 제1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제2조 관련)

명칭	위치
가. 스포츠파크 나. 국민체육센터 다. 거창군 다목적체육관 라. 거창군 체육관	거창읍 심소정길 39-36 일원
마. 고제면 문화체육회관	고제면 고제로 46
<u>바. 제2스포츠타운</u>	<u>남하면 영서로 187 &lt;신 설&gt;</u>
<u>사. 그 밖의 체육시설</u>	군수가 따로 정함

[별표 1의2]  
1. 체육시설

체육시설 사용료(제11조제1항 관련)

(단위: 원)

시설명		사용기준	사용료		
			평일	공휴일	
스포츠 파크	종합운동장 (천연잔디)	체육경기	1일 1회 3시간 이내	150,000	200,000
		체육경기 외의 행사	“	200,000	300,000
	종합운동장 (트랙)			무료	무료
	보조경기장 (인조잔디)	체육경기	1일 1회 3시간 이내	80,000	100,000
		체육경기 외의 행사	“	100,000	150,000
	다목적구장	체육경기	“	80,000	100,000
		체육경기 외의 행사	“	100,000	150,000
	씨름장 및 소규모공연장	체육경기			무료
소규모공연				무료	
거창군 다목적체육관, 거창군 체육관, 고제면 문화체육회관		체육경기	1일 1회 8시간 이내	30,000	100,000
		체육경기 외의 행사	“	50,000	120,000
<신설> 제2 스포츠 타운	야구장 (인조잔디)	체육경기	1일 1회 3시간 이내	100,000	120,000
		체육경기 외의 행사	“	150,000	200,000
	축구장 (인조잔디)	체육경기	1일 1회 3시간 이내	80,000	100,000
		체육경기 외의 행사	“	100,000	150,000
	그라운드 골프장	체육경기	1일 1회 3시간 이내	무료	무료
		체육경기 외의 행사	“	100,000	150,000
골프연습장			월 사용료	70,000	
테니스장		회원	월 사용료	7,000	
		비회원	일 사용료	4,000	
			월 사용료	20,000	
게이트볼장				무 료	
족구장				무 료	
궁도장				무 료	
농구장				무 료	
인라인스케이트장				무 료	
사격장				무 료	
그라운드골프장				무 료	

비고

1. 전기 및 조명 사용료: 1시간 7,000원
2. 그라운드골프장을 축구 경기용으로 사용 시 축구장 요금 적용
3.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말함

## 관련법령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2. 9.] [법률 제19598호, 2023. 8. 8., 일부개정]

**제6조(생활체육시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과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27.>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8조(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은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7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공공기관은 기관의 업무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체육시설을 개방하여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12. 29.] [대통령령 제34082호, 2023. 12. 29., 일부개정]

**제4조(생활체육시설의 설치·운영)** ① 법 제6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생활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군·구 : 지역 주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실내·외 체육시설
2. 읍·면·동 : 지역 주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실외체육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1. 1.]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40호, 2021. 6. 9., 일부개정]

**제3조(생활체육시설의 설치기준)**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법 제8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경우에는 개방시간과 이용방법 등을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하며, 그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9. 6. 25.>

## 생활체육시설의 설치기준(제3조 관련)

### 1.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체육관, 수영장, 볼링장, 체력단련장, 테니스장, 에어로빅장, 탁구장, 골프연습장, 게이트볼장 등의 실내·외 체육시설 중 지역 주민의 선호도와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

### 2. 읍·면·동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운동장, 골프연습장, 게이트볼장, 롤러스케이트장, 체력단련장 등의 실외체육시설 중 지역 주민의 선호도와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

## □ 「지방자치법」

[시행 2023. 9. 22.] [법률 제19241호, 2023. 3. 21., 일부개정]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61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시행 2023.5. 4.] [대통령령 제33448호, 2023. 5. 4., 일부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

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